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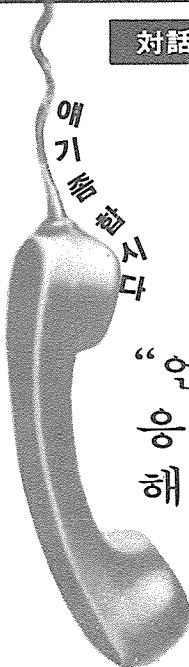
## ■ 設計事務所 組織制度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건축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복잡한 제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간단한 예로 설계사무소 등록 여건을 보자. 단독이다, 합동이다, 종합사무소다 하면서 아주 거북스럽게 그 유형과 업무의 한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또 하나의 불편한 법이 탄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제 終息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사무소 조직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합동사무소 제도가 생겼다면, 또 철저한 설계 감리를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종합사무소 제도를 만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実効를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는가? 도의적이고 원칙적인 흐름을 제도적 장치로써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법이전의 문제이다.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원칙적인 사실, 면허의 수와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 임기응변식으로 발상된 제도들이기에 아무런 実効도 얻지 못하고 불편하기만 하다.

현대 건축 설계의 업무는 아무리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많은 관련 분야 및 건축 인력이 동원되어 하나로 수렴·집약되어야 한다. 큰 일들 그리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사무소는 그 만큼 건축 인력 및 여타 조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유 경쟁 사회의 근본적 흐름이다. 설계 도서를 하나의 생산품에 비유할 때 불량품을 생산하고도 사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활동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양질의 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위 '설계비 평당 얼마'라고 통용되고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불편한 말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받는 보수의 원칙적 구성요소는 <Cost & Fee> 이다.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의 생산 원가와 노력을 투입하고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하



## “언제까지 응급조치만 해야하나”

李永熙

熙林建築設計事務所  
(本誌편찬위원장)



여 보수를 요구하고 아울러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외제면 무조건 국산 품보다 좋다는 소비자의 풍조도 이젠 없어졌다. 또 설계 도서의 질이 공사비 투자 效果를 좌우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모르는 건축주는 이젠 거의 없다. 사무소 조직 제도를 이야기 하다가 약간 방향이 빗나갔나 보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건축주는 투자 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이드하지 않더라도 목적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Survey를 할 것이다. 그 조사 대상에 단독사무소다, 합동사무소다 하는 규제가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의 불편스러운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구태여 설계사무소

의 업무처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구분 코자 한다면 그 사무소의 종합적인 인력확보 사항 및 상법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이다.

## ■ 건축물의 층수 유감

현행 法 내지 法例의 규제사항 중에는 층수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도시의 Line Sky을 층수로 형성한다든가 미관지구에서의 건물 높이를 몇 층 이하 또는 몇 층 이상으로 정해 둔 것이라든가 수도권 심의대상 건물을 몇 층 이상이라고 한정을 해 둔 것들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지하게 되는 것은 Human Scale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친근한 한 개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층수에 따라 전체의 Volume 을 계측하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기능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건물이나 외벽의 Design Factor가 층수와 관계없이 표출될 때 층수에 따른 규제 사항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특히 인구소산이라는 정책 면에서 볼 때는 건물의 층수 보다는 일단의 대지에 건축되는 건물의 연면적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층수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영101조제1항이다. 옥탑층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 이상이면 한 개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현대적 설비가 갖추어지는 대형 건물에서는 Elevator 기계실, 저수조, 공조실, 계단실 등이 옥탑층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그러고 보면 그 소요면적을 1/8 이하로 맞추기는 극히 어렵다. 올며 겨자 먹기로 최상 층에서는 승강기 착·발이 안되는 불편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반대로 소형 건물에서는 몇 층 이상의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가까스로 1/8이 넘도록 어설픈 설계(4층 건물로 보이는 데 법적으로는 5층 건물)를 하여 기형의 건물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과 같은 일률적인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다소 유연성을 두어 법적 조항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건물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